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

제정 2000. 4. 4.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-25호

중 략(부칙 참조)

개정 2012.01.16.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 1호

개정 2012.04.19.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20호

개정 2012.05.31.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25호

개정 2012.06.11.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31호

개정 2012.06.18.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32호

개정 2012.09.10.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41호

개정 2012. 9.11.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42호

개정 2012.11.19.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66호

개정 2012.11.30.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68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제9조,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금의 종류 및 내용)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(이하 "법률"이라 한다) 제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1) **보통예금** :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2) **저축예금** :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3) **듬뿍우대저축예금** :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4) **e-Postbank예금** : 인터넷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(인터넷뱅킹, 폰뱅킹, 모바일뱅킹, 자동화기기)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5) **웰빙우대저축예금** : 웰빙컨셉에 맞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이율을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

6) **주니어우대저축예금** :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수시입출식 예금

7) **2040$^{+\alpha}$ 저축예금** : 봉급생활자와 카드가맹점, 법인 등의 편익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8) **기업든든MMDA통장** : 법인, 단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9) **행복지킴이통장** : 기초생활보장, 기초노령연금, 장애인연금,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「압류방지 전용통장」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저 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

10) **우체국청춘연금통장** : 4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와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11) **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** :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써 전 국민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

12) **우체국 Young利한 통장** : 수수료에 민감하고 이용 편리성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금융이용 욕구를 반영하여 미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나. 거치식 예금

1) **정기예금** :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예금

2) **챔피언정기예금** :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 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

3) **실버우대정기예금** :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고객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실버전용 정기예금

4) **실버우대연금예금** :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고객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연금 지급식 실버전용 정기예금

5) **주니어우대정기예금** :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저축의식 함양목적 및 주니어전용으로서의 안정적인 목돈운영을 위한 정기예금

6) **이웃사랑정기예금** : 사회 소외계층,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

7) **e-Postbank정기예금** : 인터넷뱅킹으로만 상품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과 연계된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 전용 정기예금

8) **2040$^{+\alpha}$ 정기예금** :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,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

9) **우체국e-공동구매정기예금** : 한정기간(출시일로부터 한달 내) 동안 가입기간, 모집금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수시판매가 가능한 인터넷전용 정기예금

다. 적립식예금

1) **정기적금** :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

2) **가계우대정기적금** : 개인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

3) **Postbank비과세주택마련저축** :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(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) 및 소득세법 제5조(특별공제)에 의거

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

4) **이웃사랑자유적금** : 사회 소외계층,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

5) **가족多사랑적금** : 출산율 증대와 경로사상 함양 등의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공익형 예금

6) **주니어우대자유적금** :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자유적립식 예금

7) **우체국 새봄자유적금** : 저 신용 서민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본금리 외 연 7.0%p의 특별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

8) **2040$^{+\alpha}$ 자유적금** :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,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

9) **더불어 자유적금** :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지원을 위해 특별우대(Double금리)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

10) 인터넷 **2040$^{+\alpha}$자유적금** : 우체국 인터넷뱅킹을 통해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,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

11) **우체국 Smart 퍼즐적금** : 미래 금융사업의 주력 채널인 스마트 금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펀(fun) 요소를 가미한 스마트폰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

라. 기 타

1) **국고예금** :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·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

2) **환매조건부채권** :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

제3조(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)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별지1과 같다.

제4조(예치기간 및 이자율)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.

부칙<제정 2002.6.27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 및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2.10.5.>

이 고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2.11.15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2.12.20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<개정 2003.1.14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1월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년 3월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③ **(판매중지)** 자유저축예금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신규가입을 중지한다.

부칙<개정 2003.2.3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2.12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을 2003년 3월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

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2.18>

① **(시행일)** 제3항(예치기간 및 이자율)의 변경내용은 2003년 3월3일 지급분부터, 제4항(예금의 예입방법 등)의 변경내용은 2003년 3월 10일 신규가입분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3.2.24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2.28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대이율적용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3.24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3.4.3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4.28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국고예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5.1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3.5.29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7.24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③ **(우대이율 지급예금 확대)** 챔피언정기예금에 적용하던 최우수고객 우대이율은 2003년 4월 1일 계약분부터 세금만족정기예금 및 생계형 정기예금에 확대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8.21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9.18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3.12.2.>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3.12.12.>

① (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) 챔피언정기예금(예치기간 : 1년 이상 2년 미만)의 신규계약금액이 1조원 달성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.

예치기간	이율(%)			
	월이자지급식		만기일시지급식	
	개인·법인	금융기관	개인·법인	금융기관
-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	3.1	3.0	3.1	3.0
-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	3.4	3.3	3.4	3.3
-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	3.65	3.55	3.65	3.55
-1년이상 2년미만만기	4.2	3.8	4.3	3.9
-2년이상 3년미만만기	4.0	3.9	4.2	4.1
-3년 만기	4.1	4.0	4.4	4.3

※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 개정 2004.1.30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3.2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3.26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4.16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04년 5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③ (유효기간 경과시 적용례)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의 이율은 이 고시 시행이전의 이율을 적용한다.

④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4.23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6.30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4.7.21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8.20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8.25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9.6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4.9.16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11.17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4.12.1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-Card 정기예금 관련사항은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4.12.24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2.25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3.7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5.3.18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3.31.>

① (예치한도 일시 조정) 제2항의 I-Card정기예금 예치한도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I-Card정기예금 예치한도는 200만원 이상 2,500만원 이하로 한다.

② (I-Card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) 제3항 서호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현대카드-I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I-Card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최초 가입 후 1년은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+ 0.3%p를 적용한다. 이 예금 가입 1년 이후 가입 응당일에 자동 재가입된 경우에는 가입 응당일의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+ 0.2%p를 적용한다.

③ 부칙 제1항 및 제2항은 신규 계약금액이 2,000억원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시점의 가입예금까지만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6.10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5.8.19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

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.3%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. 단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, 가입일,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.

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9.21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5.9.28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5.9.28.>

-

① (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) 2005년 10월 4일부터 2005년 10월 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.

다만, 2005년 10월 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(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및 I-Card정기예금 포함)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.

예치기간	이율(%)			
	월이자지급식		만기일시지급식	
	개인.법인	금융기관	개인.법인	금융기관
-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	3.0	3.0	3.0	3.0
-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	3.2	3.2	3.2	3.2
-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	3.4	3.4	3.4	3.4
-1년이상 2년미만만기	4.2	3.5	4.3	3.6
-2년이상 3년미만만기	3.5	3.5	3.6	3.6
-3년만기	3.5	3.5	3.7	3.7

※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10.7.>

① (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) 2005년 10월 4일부터 2005년 10월 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.

예치기간	이율(%)			
	월이자지급식		만기일시지급식	
	개인.법인	금융기관	개인.법인	금융기관
-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	3.0	3.0	3.0	3.0
-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	3.2	3.2	3.2	3.2
-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	3.4	3.4	3.4	3.4
-1년이상 2년미만만기	4.2	3.5	4.3	3.6
-2년이상 3년미만만기	3.5	3.5	3.6	3.6
-3년만기	3.5	3.5	3.7	3.7

※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

② 기존의 단서조항 “2005년 10월 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(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및 I-Card정기예금 포함)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.”를 삭제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10.17.>

① (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) 2005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. 다만, 시장금리 우체국예금 수신고 증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기 판매기간 이전에 판매를 중지할 수 있음

예치기간	이율(%)			
	월이자지급식		만기일시지급식	
	개인.법인	금융기관	개인.법인	금융기관
-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	3.0	3.0	3.0	3.0
-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	3.2	3.2	3.2	3.2
-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	3.4	3.4	3.4	3.4
-1년이상 2년미만만기	4.2	3.5	4.3	3.6
-2년이상 3년미만만기	3.5	3.5	3.6	3.6
-3년만기	3.5	3.5	3.7	3.7

※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10.26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11.2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16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.3%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. 단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, 가입일,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.

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5.11.17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5.11.18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5.11.21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5.12.22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항 아호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6.1.17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6.4.28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적금 및 듬뿍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6.6.15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(챔피언정기예금포함), 환매조건부 채권, 듬뿍우대저축,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 이율을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6.8.3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6년 8월 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6.8.24.>

이 고시는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6.10.26.>

이 고시는 2006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6.10.26.>

이 고시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6.11.15.>

①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(1년 만기)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

정기예금 이율에 1.0%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. 단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, 가입일,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.

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7.2.13.>

이 고시는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7.6.20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(1년 만기)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.0%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. 단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, 가입일,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.

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

없으며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7.6.21.>

이 고시는 2007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7.7.13.>

이 고시는 200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7.7.31.>

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7.9.21.>

이 고시는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7.9.27.>

이 고시는 2007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7.11.29.>

① 이 고시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4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(1년 만기)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.0%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. 단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, 가입일,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.

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,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7.12.28.>

이 고시는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8.2.12.>

이 고시는 200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8.8.21.>

이 고시는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8.7.2.>

1. 이 고시는 200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8.8.11>

1. 이 고시는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8.9.3.>

1. 이 고시는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8.9.26.>

이 고시는 2008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8.10.8.>

1.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8.10.23.>

1.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

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8.11.11.>

1.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8.11.21.>

1.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8.12.18.>

1.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8.12.26.>

1.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1.12.>

1. 이 고시는 200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1.20.>

1. 이 고시는 200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2.9.>

이 고시는 200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9.2.18.>

이 고시는 200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9.2.11.>

1. 이 고시는 200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3.20.>

1. 이 고시는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4.13.>

1. 이 고시는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4.27.>

1. 이 고시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6.4.>

1. 이 고시는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7.15.>

이 고시는 2009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9.8.18.>

1.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2. `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9.2.>

1. 이 고시는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9.4.>

1. 이 고시는 2009년 9월 7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9.17.>

1. 이 고시는 2009년 9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10.8.>

1.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10.27.>

1.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12.24.>

1.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09.12.31.>

1. 이 고시는 2010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1.20.>

1. 이 고시는 2010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2.9.>

1.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2.25.>

1. 이 고시는 2010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3.15.>

1. 이 고시는 2010년 3월 17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3.22.>

1. 이 고시는 2010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3.25.>

1. 이 고시는 2010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

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4.7.>

1. 이 고시는 2010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4.20.>

1. 이 고시는 2010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5.18.>

1. 이 고시는 2010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6.2.>

1. 이 고시는 2010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6.4.>

1. 이 고시는 2010년 6월 4일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“3. 예치기간 및 이자율” 중 “라. 정기예금(2)중도해지이율”의 “30일 미만 이율 0.2% 와 30일 이상 경과분 1.0%” 및 “사.정기적금(2)중도해지이율”의 “30일 미만 이율 0.2%”부분은 2010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 7. 01.>

1.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0. 8. 29.>

1. 이 고시는 2010년 8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0. 9. 8.>

이 고시는 2010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0. 10. 01.>

이 고시는 2010년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0. 12. 29.>

이 고시는 2011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1.01.17.>

이 고시는 2011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1.01.31.>

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1.03.18.>

1. 이 고시는 2011년 3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우수고객제도 변경(2011. 2. 10 시행)에 따른 등급별 우대금리는 2011. 1월 우수고객부터 적용하되, 기존 우수고객은 서비스 기간(선정 후 6개월) 만료 시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3.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율과 이자계산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1.03.25.>

1. 이 고시는 2011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고시 시행 이전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은 2011년 3월 결산일(3.26)까지는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계산을 하고 2011. 3. 27부터는 매일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변경 고시된 이율을 적용한다.

구분	이율(연 %)	
	법인 및 단체	금융기관
5천만원미만	0.1	-
5천만원~1억원미만	**0.2**	0.1
1억원~5억원미만	**0.5**	**0.3**
5억원~10억원미만	1.0	**0.8**
10억원~100억원미만	**1.4**	**1.1**
100억원~300억원미만	**1.5**	**1.2**
300억원~500억원미만	**1.6**	**1.3**
500억원이상	별도금리	별도금리

부칙<개정 2011.03.28>

1. 이 고시는 2011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1. 5. 3>

1. 이 고시는 2011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1. 5. 13>

1. 이 고시는 2011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1. 5. 20>

1. 이 고시는 2011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1. 10. 27>

1. 이 고시는 2011년 10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가계우대정기적금 가입한도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, 거치식예금의 이자계산방식 및 이웃사랑정기예금 분할해지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거치식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이자계산방식을 계속 적용한다.

부칙<개정 2011. 11. 25>

이 고시는 2011년 1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1. 12. 16>

이 고시는 2011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 1. 16>

이 고시는 2012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 4. 19>

이 고시는 2012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 5. 31>

이 고시는 2012년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 6. 11>

이 고시는 2012년 6월 1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 6. 18>

이 고시는 2012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 9. 10>

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 9. 11>

이 고시는 2012년 9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 11. 19>

이 고시는 2012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 11. 30>

1.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2. (판매중지)『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』과 『더불어자유적금』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을 중지한다.